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제분쟁조정위원회를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및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이 개정(법률 제19986호, 2024. 1. 9. 공포, 2024. 7. 10. 시행)됨에 따라,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국토교통부령 제 호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7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97조(분쟁조정신청서 등) ① 영</u> <u>제29조제2항에 따른 공제분쟁</u> <u>조정의 신청은 별지 제49호서식</u> <u>의 공제분쟁조정 신청서에 따른</u> <u>다.</u> <u>② 제1항의 공제분쟁조정 신청</u> <u>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</u> <u>부하여야 한다.</u> 1. <u>당사자 간의 교섭경위서(분</u> <u>쟁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</u> <u>교섭내용과 그 증명자료)</u> 2. <u>그 밖에 분쟁조정 신청사건</u> <u>의 심사·조정에 참고가 될</u> <u>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</u>	<u><삭 제></u>